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동부권역 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공간 및 기술·경영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31일  
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## 1. 모집개요

- 모집내용 : 창업혁신공간 북동부권(구리) 입주기업(퇴움) 신규 모집
- 모집기간 : 공고일 ~ '26. 1. 13.(화) 18시
- 모집규모 : 총 4개사 (퇴움 4개사)

구분	입주공간	모집	입주기간	비용
초기(퇴움) Pre-BI	1인석	16개사	'26.2.2. ~ '26.12.31.(약 11개월)	무상

## 2. 입주대상

- 입주자격 : 예비 ~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 가능

구분	업력조건	경영실적조건(해당없음)			비고
		매출액	투자금액	고용	
초기(퇴움) Pre-BI	예비 ~ 창업 1년 이내 기업	-	-	-	-

※ 업력조건 : 공고일 기준(창업개시일 : '24. 12. 31. ~ '25. 12. 30. 이내 기업)
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자
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
  - 개인사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
 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성립연월일

- (모집분야) 혁신·신산업 분야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

### <혁신·신산업 분야 세부 기술 예시>

분 야	혁신·신산업 분야
BIG3	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
D.N.A	Date, Network, AI 등
탄소중립	에너지, 대기, 수질, 생활환경 등
혁신분야	인공지능, 빅데이터, 가상융합현실(XR), 사물인터넷(IoT) 등

○ (입주제한) 공해유발 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제한 기업 등 ※별첨 참조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대상으로 제재 중인 기업
- 「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 의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하기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(1회 이상, 총점에서 20% 감점 적용)
  - ① (공정)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(노동)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
  - ⑥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
  - ⑩ (납세)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

## 4. 선정방법

○ 선정절차

추진절차	일정	주요내용	비고
모집공고	공고일~'26.1.13.	입주신청서 등 작성 → 담당자 이메일 제출	신청기업- GBSA
1차심사	'26.1.16.	1차(서류심사) 실시 → 2배수 내외 2차 심사 상정	GBSA
2차심사	'26.1.23.	2차(발표심사) 실시	GBSA
결과통보	~'26.1.27.	최종 결과 통보 및 선정기업 개별안내	GBSA-신청기업
협약실시	'26.1.27.~	신규 입주기업 협약/계약 실시	GBSA-신청기업
신규입주	'26.2.2. ~	신규입주 실시	선정기업

※ 상기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(입주시기) 2026년 2월(예정)

○ (심사기준)

구분		세부내용	
1차	초기(특움) Pre-BI (100점)	평가항목	· 경영능력(20점), 사업계획의 적정성(40점), 창업아이템(20점), 성장전망(20점)
		1차심사면제	· 창업진흥원 주관 창업패키지, 경기창업혁신공간 지원사업 선정 통보문
2차	초기(특움) Pre-BI (100점)	평가항목	· 창업기업우수성(25점), 아이템 기술성(30점), 기업구성 계획(20점), 투자유치 계획(25점)

## 5. 제출서류

### ○ (제출서류) 필수제출 서류 및 해당서류 (예비창업자/창업기업 中 택 1)

\* 유효기간 명시된 서류는 접수 마감일('26.12.31.) 기준으로 증빙서류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

구 분		제출서류	비고
공통 (필수)	공통제출 (필수)	[서식1]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-
		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	-
		[서식3] 범위반사실(부존재)여부 협약서	-
	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-
	신분증 사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中 1	
택1 (필수)	예비창업자	사실증명원 ·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·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	- 발급기준 : 공고일(12.31.) 이후 발급분 - 발급처 : 세무서, 홈택스, 정부24 · 총 사업자 등록내역 ('18.12.31~'25.12.30.) · 현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
	창업기업	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(법인기업 해당시)	- 발급기준 : 공고일(12.31.) 이후 발급분
1차심사 면제 (해당시)	면제대상 증빙용	창업진흥원 주관 창업패키지 선정 통보문 경기창업혁신공간 지원사업 선정 통보문	1개 이상 제출

### ◎ (예비 창업자) 사실 증명 발급 방법

#### 1. 온라인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, 정부 24)

1) 국세청 홈택스에서 참가팀 대표자(신청자)명으로 발급(www.hometax.go.kr) 발급 소요시간 : 3시간 이상 소요

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: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발급

국세청 홈택스\_국세증명\_사업자등록\_세금관련\_신청/신고\_사실\_확인 후 발급증명

사업자등록사실여부 "증명받고자 하는 내용>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" 로 반드시 선택 후 발급 요청

② 사업자가 있는 경우 : 사실증명(총 사업자등록내역/폐업사실증명) 발급

②-1. 사실증명(총 사업자등록내역)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(개인 : 사업자등록증, 법인 :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)

\*예) 유지중인 개인사업자 3社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3부 제출

②-2. 사실증명(폐업사실증명)

- 사업자가 이전에 있었지만 현재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제출

- 국세청 홈택스 국세증명 ·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폐업사실증명

③ (참고) 사업자등록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홈택스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발급

#### 2. 오프라인 발급 방법 : 세무서에 발급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

## 4. 입주혜택

- 무상 창업공간(지정석)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 영위
- 시제품 제작지원 및 경영 멘토링,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 지원
- 지역 특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

### [참고] 창업혁신공간 북동부권(구리)



**【붙임】**

**입주공간별 임대조건 및 비용**

(단위 : 원 / 부가가치세 별도)

구분		보증금	월사용료	비고
퇴움	1인실	-	-	무상
키움	3인실	-	-	변동관리비 실비 월별 납부
	4인실			
	5인실			
이룸	A type 33㎡(10py)	900,000	90,000	보증금 입주 전 선납 사용료, 변동관리비 실비 월별 납부
	B type 49.5㎡(15py)	1,350,000	135,000	

**※ 유의사항**

-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허위 사실 기재/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, 본 공고의 신청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주신청을 불인정함
-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2차 발표심사는 본인(대표),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참여
- **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'창업혁신공간'으로 등록 또는 이전 변경 완료 必**
  - ↳ · 퇴움(예비창업자) : **입주 ~ 6개월** 이내에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(본사) 등록
  - 퇴움(기존 사업자) : **협약일 ~ 3개월** 이내에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(본사) 등록
- 입주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완료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이 협약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입주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
- 월별 출석율 50% (공휴일, 주말 제외) 이상 유지 이행 조건 (퇴움 한정)
  - ※ 해당 내용 미이행시 1회차(경고), 2회차(퇴거요청) 순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, 출장 등의 경우 일부 출석 인정 가능 (출석체크는 직원 또는 대표의 출석자 서명으로 인정)
- 입주좌석 내 사무집기류(책상, 의자 등)는 **퇴움/키움에 한하여 제공**
- 건물 내 주차장 이용 사항은 입주 승인 기업 별도 안내
- 지원센터는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약만료 후 퇴실 시 센터 담당 매니저의 확인을 통해 사용 목적물 원상 복구를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접수 및 문의처

- (접수기간) **공고일 ~ '26. 1. 13.(화) 18:00 限**
- (접수방법) 담당자 이메일 접수

- 1) 경기스타트업플랫폼([www.gsp.or.kr](http://www.gsp.or.kr)) 및 이지비즈([www.egbiz.or.kr](http://www.egbiz.or.kr)) 홈페이지 내 '지원사업' 페이지  
→ 제출서류(양식) 다운로드 및 작성
- 2) 제출 서류는 작성 후 담당자 메일([ljs1225@gsa.or.kr](mailto:ljs1225@gsa.or.kr)) 제출 (**담당자 메일 제출건에 한정 인정**)  
※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, 파일명에 신청기업명(또는 신청자) 기재하여 제출  
ex) 창업혁신공간 북동부권역(구리) 입주기업 신규모집 신청서\_홍길동

- (문의처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창업허브팀

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이주성	031-830-8511	<a href="mailto:ljs1225@gsa.or.kr">ljs1225@gsa.or.kr</a>
(11901)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90 A존 4층 운영사무실		

**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**

□ **관계 법령**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

<b>지식 산업 센터</b>	<b>제조업</b>	<p>○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에 따른 제조업</p> <p>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도시형공장만 입주 가능</p> <p>※ 도시형공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배출시설 4종, 5종 설치 사업장 (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제외)</li> <li>- 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</li> </ul> <p>⇒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제외(다만,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가능)</p> <p>※ 관련부서 : 구리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(폐수, 대기 ☎ 031-550-2453)</p>
	<b>지식 기반 산업</b>	<p>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연구개발업, 건축기술-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, 광고물 작성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, 출판업, 전문 디자인업, 포장 및 충전업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, 경영컨설팅업(재정-인력-생산-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체만 해당),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, 전시 및 행사 대행업, 환경 정화 및 복원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,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, 광고대행업, 옥외 및 전시 광고업,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, 보안시스템 서비스업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,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</p>
	<b>정보 통신 산업</b>	<p>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자료처리·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,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, 전기통신업</p>
	<b>벤처 기업</b>	<p>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</p>
	<b>기타</b>	<p>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: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</li> <li>-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: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</li> </ul>
<b>지원시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·보험·교육·의료·무역·판매업(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)을 하기 위한 시설</li> <li>- 유희시설,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·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</li> <li>- 근린생활시설(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)</li> <li>- 문화 및 집회시설,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운동시설</li> <li>- 판매시설 중 상점(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)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: 보육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</li> <li>·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: 해당 상점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</li> </ul> </li> <li>-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오피스텔(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)</li> </ul>	

##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 제1항,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2호 나목에 따라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12일

**구 리 시 장**

### 1.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목록

구분	업종분류코드 / 업종명			
OEM 제조업	10-34	주문자상표부착생산제품(생산제품 직접기획, 원재료 구입 제공 또는 원재료 명세서 제공후 비용 부담, 자기명의 제조, 직접판매)		
스마트팜 수직농장		인공구조물 내 생물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생산하는 시스템		
[종합·전문] 건설업	-	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에 해당하는 건설업		
전기공사업	-	전기공사업법 시행령 [별표1]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		
정보통신공사업	-	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[별표1]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		
소방시설 공사업	42205	소방시설 공사업		
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	5913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	59202	녹음시설 운영업
방송 및 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	60100	라디오 방송업	60210	지상파 방송업
	60221	프로그램 공급업	60222	유선방송업
	60229	위성 및 기타 방송업		
법무 및 회계, 세무 관련 서비스업	71101	변호사업	71103	법무사업
	71201	공인회계사업	71202	세무사업
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	76320	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	76390	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

### 2. 시행일 : 2025. 5. 12.